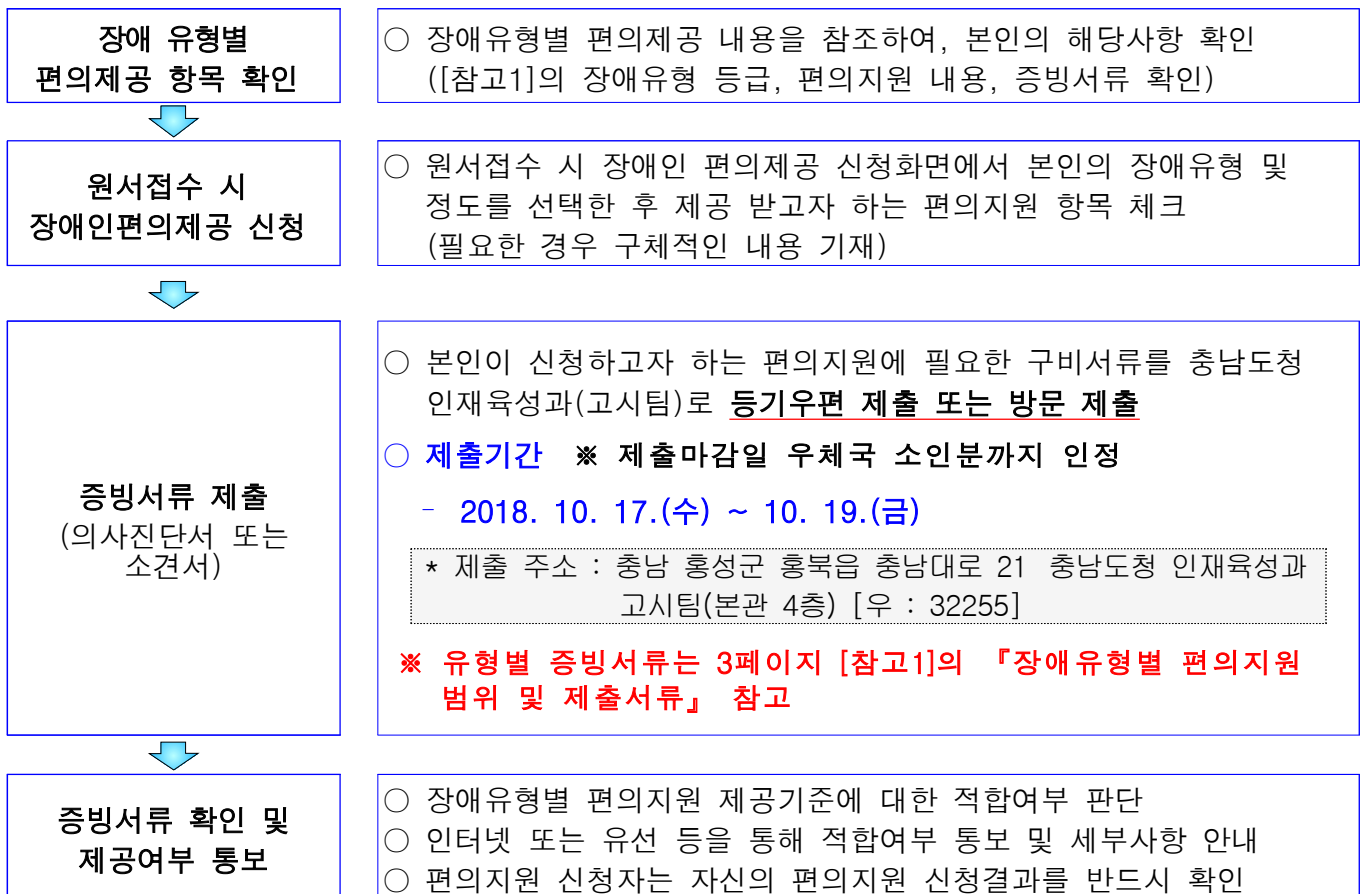


# 2018년도 제8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임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

## 1 편의지원 제공 대상

- 2018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, **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**
  -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
  - 시각·지체·청각·뇌병변 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자
- 기타 특수·중복 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## 2 편의지원 신청 절차



###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

1.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여부, 증빙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'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3쪽 참고)'를 확인 [의사진단(소견)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]
2.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내용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3.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([참고2]발급일자 및 발급 내용 확인)  
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
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는, [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\(www.hira.or.kr\)](http://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4. 시험시간연장, 점자문제지, 음성지원 등의 편의지원은 제한됩니다.
5.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재육성과 고시팀(041-635-353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 1**

**2018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**

장애유형 및 등급			필기시험	
	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
지체 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없음
		1급~3급	· 답안지 대필	
	4급~6급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	
	하지	1급~6급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없음
뇌병변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없음
	1급~3급		· 답안지 대필	
	4급~6급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
시각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없음
	1급~2급		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
청각 장애	2급~6급		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없음
기타	임신부		· 높낮이 조절 책상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소견서 1부
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	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(검토후 안내)
	과민성대장 (방광)증후군		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

※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
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

##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시 유의사항

### 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가능

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### 2. 발급일자 :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

구 분	제8회 경력경쟁임용
응시원서 접수마감일	2018년 10월 19일
진단서(소견서) 발급일	2016년 10월 19일 이후

### 3.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①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에 대한 구체적 진술 (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)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(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)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(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)
 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 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
  -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#### <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예 시
임 신 부	상기인은 임신 6주,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,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